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2
----------	-----

제출년월일 : 2015년 3월 2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 수준 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나.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첨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15.2.13~3.4) 결과 : 제출의견 1건, 반영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시기는 시장이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제14조 ~ 제17조 (생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이동주(2133-2216)